제94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(금융위원회)</td><td>1.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(신설)
○ 수익률 · 운용실적을 이용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조항 신설

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스마트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요건(신설)
○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규정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정 요건</th></tr>
<tr><td>시설 및 장비</td><td>▸강의실 및 실습장 각각 1개 이상
▸편의시설(회의실, 자료실, 상담실 등)
▸교육보조재(컴퓨터, 빔프로젝터 등) 및 실습 기자재 구비</td></tr>
<tr><td>인력</td><td>▸책임교수요원(1명 이상) : 농업·축산분야의 박사학위자, 농업·축산분야 기술사, 스마트농업관리사
▸교수요원(1명 이상) : 농업·축산분야의 석사학위자, 농업·축산분야 기사이상, 스마트농업관리사
▸전담운영인력(1명 이상)</td></tr>
</table>
▶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2.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사항(신설)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시설원예·축산기술사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규정(안 제4조, 별표 2) – 6개 분야 40시간 교육(이론 15~16시간, 실습 24~25시간) ○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규정(안 제5조, 별표 3) – 시설원예/축산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 – 축산산업기사 + 1년 경력 – 학사 + 2년 경력, 전문학사 + 4년 경력 – 스마트농업 실무경력 5년 이상 ○ 스마트농업관리사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(안 제8조, 별표 4) ▶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,제5조,제8조	
3	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○ 정수압시험, 주위온도시험, 가스켓 고온노출 누설시험, 반사판 강도시험, 진동시험 및 수격시험 등 기존 시험 항목 기준을 강화하고, 응력부식균열시험, 경사작동시험, 거친사용시험, 최소작동압력시험, 실화재시험 및 열차단성능시험 기준을 신규 도입 ▶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,제5조,제5조의6,제8조의2,제9조,제10조,제11조의2,제12조의3,제13조의3,제14조,제15조의2,제15조의3,제15조의4,제28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(신설) ㅇ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범위를 정보를 전송받는 주체(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)에 따라 구체화(안 제42조의2) ㅇ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(안 제42조의4) 2.개인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 방법 등에 관한 사항(신설) ㅇ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목적, 전송받는 자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고, 정기적 전송 요청 가능(안 제42조의5) ㅇ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이 유지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해야 함 – 제3자 전송시 중계전문기관을 통하도록 의무화 –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, 보관기관(3년)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(연 1회 이상) 등 의무 부과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절차 등 규정 ㅇ 개보위가 전송요구권에 따라 정보를 전송 및 수신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(안 제42조의12) ㅇ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등록 의무, 플랫폼 운영 관련 개보위에 자료제출 의무 등 (안 제42조의13)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,제42조의4,제42조의5,제42조의6,제42조의7,제42조의12,제42조의13	1.중요 2.중요 3.중요 4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개인정보를 정송받는 정보수신자에 관한 사항(신설) ○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일반수신자를 '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자'로 명확화 – 일반수신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송요구 시스템, 보호설비 및 기술 등 세부 기준은 고시로 구체화 ○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중계·일반·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,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 구체화(안 제42조의9제1항) ○ 개보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·재지정하는 절차, 변경심사, 유효기간 등을 설정 ○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, 지정 취소사유 및 취소 절차, 취소시 후속조치 사항 등 구체화(안 제42조의10, 제42조의11)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, 제42조의9, 제42조의10, 제42조의11 4.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(강화) ○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고, 「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」에 대한 위임근거 명시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,제29조의4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(경찰청)	1.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 (신설) ○ 법에서 위임한 ‘학원등의 교육·검정 등’의 업무를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, 기능검정 업무로 구체화 ▶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의2	1.중요
6	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(강화) ○ 연면적 500㎡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를 법정관리 시설인 ‘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(시행령 별표 1의2)’로 지정 ▶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	1.비중요
7	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(강화) ○ △액체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 범위 및 금속부식 시험 △분말소화약제의 흡습률, 온도상승 및 절연내력 시험 △기타 표시사항 기준 등 신설 및 강화 ▶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제4조,제6조,제7조,제10조,제1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제거 대상 방치 물건 범위(신설) ○ 관광지 내 무단 방치·설치되어 관할 지자체장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규정 – ▵야영용품 ▵취사용품 ▵그 밖의 관광지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조례로 정하는 물건 ▶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2 2.제거 대상 물건의 보관 · 처리 절차(신설) ○ 제거된 물건 등에 대한 관리청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 – (처리 절차) 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(1개월) → 공고기간내 소유자 미확인·미회수시 일간신문·공보·방송 재공고 → 재공고일부터 1개월 도과 후 매각 또는 폐기 가능 * 소유자 확인시 보관비용 납부 등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 – (매각 수익) ▵물건 매각·폐기 비용에 우선 충당 ▵1년 이내 반환요구가 없으면 잔여분 국고 귀속 ▶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방치된 물건의 제거 요건(신설) ㅇ 관광지 내 방치된 물건을 관할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화 – 반복·상습적으로 무단 설치·방치되어 긴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– 기상악화·자연재해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– 그 밖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긴급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해당 관리청(지자체)이 정하는 경우 ▶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3	1.비중요
10	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시각 · 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 의약품, 표시사항 등 신설(신설) ㅇ 시각 ·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용기 ·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의약품(28개) 지정 ㅇ 용기 · 포장 및 첨부문서의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사항, 세부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 ▶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신설(신설) ㅇ 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용기·포장 및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의약외품(15개) 지정 ㅇ 용기·포장 및 첨부문서의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사항, 세부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 ▶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4,제4조의3	1.비중요
12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야간·휴일 소아진료기관의 지정방법·절차(신설) ㅇ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– 필요한 시설·인력·장비 구비 – 진료 실적 등 역량 구비 – 운영계획의 적절성 ㅇ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절차 –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서류*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를 거쳐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 * 시설·인력 및 장비 등 현황, 운영계획서 –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 –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3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(신설) ㅇ 정자 기증자도 정자 기증 전 건강검진 실시하고, 기준 미달 시 채취 금지 ㅇ 건강검진 결과를 정자 기증자에게 통보 ▶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	1.비중요
14	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질병관리청)	1.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기준 등 (신설) ㅇ (지정요건)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지정요건(실적, 인력, 공간 등)을 갖추어 지정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– (실적) 사업실적에 기후보건 관련 업무실적이 포함 – (인력) 전담 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 – (공간) 전용 업무 공간 보유 ▶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	1.비중요